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

- 1. 지방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에 감사들 드립니다.
- 2.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원가 부담 및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치 단체 계약집행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담당자는 동내용을 숙지하여 계 약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 및 시·도교육청 에서는 시·군·구, 지방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 적 용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

구 분	내 용	비고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 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 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 22, 30, 영 § 75의2, 90, 예규
원자재 가격변 동 조치사항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 격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 재(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에 한정하여 물 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u>90일 이내인 경우</u> 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물품구매 6%)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및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	법 § 22, 영 § 73, 예규

끝.

해**저어저**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 대고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 울산광역사장(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기회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양원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생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기획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 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교육재정과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 앙회장

전문임기제 나 대결 2022.4.1.

급 **예병찬** 행정사무관 **양현진**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2416 (2022. 4. 1.)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2 팩스번호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대국민 공개